

조현증 특허법 객관식문제집 정오표

순번	쪽	문제 번호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1	591	23	(마) 특허법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침해죄, 허위표시죄, 거짓행위죄뿐이다.	(마) 특허법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침해죄, 허위표시죄, 거짓행위죄, <u>비밀취급명령 등 위반죄</u> 뿐이다.	개정법 반영
			(마) 101 양벌규정은 침해죄, 허위표시죄 및 거짓행위죄에만 적용된다.	(마) 101 양벌규정은 침해죄, 허위표시죄, 거짓행위죄 <u>및 비밀취급명령 등 위반죄</u> 에만 적용된다(법 제230조).	
2	876	09	해설 ① 시행규칙 제106조의 4 (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. 대표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이때 대표자는 시행규칙 제106조의4에 따라 법 제19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 중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할 수 있다. 만약 甲이 재외자라면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지 않으니 乙을 대표자로 할 수 있고, 甲이 재내자라면 2호에 해당하고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니 甲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.)	해설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. 대표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이때 대표자는 시행규칙 제106조의4에 따라 법 제19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 중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할 수 있다. 만약 甲이 재외자라면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지 않으니 乙을 대표자로 할 수 있고, 甲이 재내자라면 2호에 해당하고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니 甲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.	해설 오기 수정
3	419	03	② 상기 ①의 경우 특허출원이 <u>분할출원</u> ,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,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결정을 한 경우,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 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보류신청을 할 수 없다.	②상기 ①의 경우 특허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,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,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보류신청을 할 수 없다.	시행규칙 개정법 반영
4	638	02	(가)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독점적 실시가 인정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	(가)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독점적 실시가 인정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<u>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</u>	2차 특허법에 기출된 상표최신 판례 반영

		<p>해설: ×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독점적 실시가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소위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 하는데, 독점적인 지위는 특허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될 뿐이며 제3자에 대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.</p>	<p>해설: ×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. 이때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.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 과거 일부 학설에 따르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에 불과하고 특허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전용실시권과 구분되며 전용실시권처럼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단지 민법 논리에 따라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만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, 판례는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(대법원 2024. 10. 25. 선고 2023다280358 판결).</p>
--	--	---	---